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야유회비, 연중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C사의 전직 직원들은 C사의 교통비, 야유회비, 연중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를 경우 미지급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C사를 대리하여 (i) 이 사건은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고정성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ii)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iii) 설령 일부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도 그 가산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이 정한 가산율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 취사선택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i)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의 통상임금성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ii) 또한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미지급 금품 산정방식에 있어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체협약이 정한 가산율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련구성원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

이세리
변호사

02-316-4034
srlee@shinkim.com

조찬영
변호사

02-316-4109
cyocho@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